

서울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기본 운영방침 및 세부운영 기준

(2025. 9. 8.)

□ 기본 운영 방침

○ 기본 방향

- 지원범위: 학생인건비 최저기준금액* 보장을 위한 부족분 지원
* 석사 80만원, 박사 110만원
- 지원요건: ① 이공계 + ② 전일제 대학원생 + ③ 연구활동 중인 자
- 매월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‘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’ 전체 명부를 전산으로 확정·관리
- ※ 변경사항 발생 시, 참여교원·학생연구자는 산학협력단에 즉시 알리고 연구참여
확약서 등 수정 필요

○ 지원대학원생 세부 요건

① 이공계

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
-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, 세부전공이 기초연구(임상제외)로 면허증·자격증(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)을 보유하지 않고,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이공계로 분류하여 지원 가능

② 전일제 대학원생

- 대학원 재학생(통합과정생 및 연구등록 수료생 포함)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 보험(이하 4대 보험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
- 휴학·취업·졸업·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

③ 연구활동 중인 자

- R&D/용역과제 등 모두 포함하며, 연구참여확약서·과제협약서 등을 기준으로 파악·관리
- 현재 연구개발·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중인 학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학위과정(석/박/통합) 이수 기간 중 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학생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
- 지도교수 확인 절차 필요

○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· 관리

- 연구생활장려금은 국가연구개발비 직접비 중 ‘학생인건비’에 해당하므로 집행 · 관리 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를 준수(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의무) 하여야 하며,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일에 기관계정에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
- 원칙적으로 ‘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’ 대상자에 대한 산단 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총액*이 매월 기준금액(석사 월 80/박사 월 110) 이상이 되도록 관리
 - * 정부·민간·지자체·대학 지원 R&D과제, BK21사업, 대학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사업, 기타 용역과제 등 산단회계로 관리·지급하는 일체의 학생지원금(학생인건비·장려금 등 명칭 무관)을 포함하여 산출
-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*을 우선 집행 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(2026.9.1.부터 시행, 한국연구재단 「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」 개정(2025. 8.26.) 반영)
 - * 당해연도 신규 잔액, 학사생 인건비, 비이공계소속 대학원생 인건비 제외
-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소급 지급 불가
- 매년 정부재정지원금(부족분) 지원 후 잔액은 대학계정*에서 이월 관리
 - * 기관세부계정(단과대학, 학과(부) 등)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관 세부계정에서 정부재정지원금(부족분) 잔액 이월 관리 가능

○ 장려금 운영 모델

- (대여-상환 모델)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교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여-상환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영
- 학생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‘기관계정에서 우선 지원’ 하되(= 대여) 일정 기간 내 연구비 수주 시 ‘지원받은 만큼 기관계정에 이체’ (= 상환)



○ 운영 점검

- 정부에서 연차 · 수시점검, 단계평가(3년 단위) 등을 통해 대학별 운영현황, 사업 운영 · 관리 애로사항 등 점검 예정
- 대학은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 후 연차점검 시 보고

□ 세부운영 기준

1. 제도 시행 시점

- 장려금 지급 개시: 2025년 9월부터 시행

2. 의사결정기구

- 서울대학교 연구운영위원회
 - 사업 관련 기본계획,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검토
 - 정부 지침 변경 사안 등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및 공유
 - ※ 필요시 세부 운영사항을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 추진

3. 정부재정지원금(부족분) 예산 배분 (2025년)

- 2021-2024년도 학과별 평균 부족분의 비율만큼 학과별 배분
- ※ 사업 신청 시 정부의 재정지원 산출 기준에 따름

4. 이공계 범위

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및 학과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되, 계열 간의 연계·융합으로 어느 계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「고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(학칙)으로 계열을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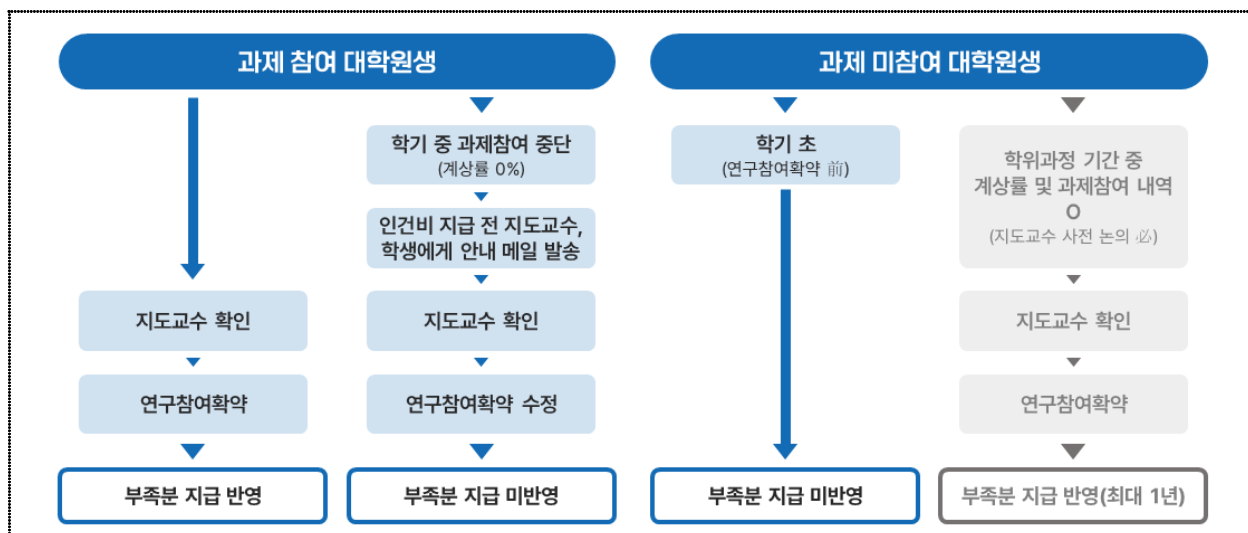
5. 과제 미참여 및 지도교수 미지정 대학원생 지원 기준

- 과제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현재 과제 미참여 중이더라도 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참여 이력이 있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사전 논의 후 지도교수 확인 및 참여확약체결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
-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은 지급대상 제외
- (지도교수 지정/미지정) 학교 시스템에 지도교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으나 연구과제에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은 지급 대상에 포함
- ※ SRnD에 수기로 (임시)지도교수를 입력하도록 기능 구축

6.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부족분(대여금) 산출

- 학기 초 연구책임자계정 및 기관세부계정 일반재원, 장려금 등을 포함한 학생 인건비 지급 계획 수립 후 연구참여확약을 체결 진행
 -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내 지도교수 서명 불가하여 지도교수 확인 절차 별도 진행
 - 1차년도는 교내 장학금(GSI 등)은 지급조건에서 제외하되 추후 연구관련 교내 장학금 포함 여부 재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 예정
 - 타 기관 수행 연구과제의 인건비는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시키며, SRnD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역(예. 비R&D 과제)은 지도교수-대학원생 간 확인서(서명)를 제출하거나 SRnD에 인건비 지급정보 입력 필요

○ 연구활동 기준 별 프로세스



- 학기 중 과제참여 중단으로 수행과제가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(SRnD 등록 기준 계상률 0%) 해당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, 그럼에도 지도교수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**인건비 지급 전 부족분 지급 자동제어 예정**
 - 지도교수의 부재, 대학원생 미확인 등으로 인건비 지급일까지 지도교수 확인, 연구참여확약서 수정 체결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 방지
- 부족분 산출을 위한 SRnD 지급조건 등록 마감: 인건비 지급일 8일 (근무일 기준) 전까지 참여연구원 등록·변경 완료
-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*을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잔액을 우선 집행 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(2026.9.1.부터 시행)
 - * 당해연도 신규 잔액과 학부생 및 비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금액은 제외

7. 상환 제도

○ (대여금 상환율) 100%

○ (상환기한) 대여 발생월 기준 둘째 학기 말일까지

※ 2025년 10월(2025년 2학기) 대여한 경우 → 2027년 2월(2026년도 2학기 말일)까지 상환

○ (상환 주체) 지도교수의 연구책임자계정

- 원칙적으로 상환계정은 변경이 불가하나, 퇴직 임박 교원, 비전임 교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등을 활용하여 기관계정으로 이관하여 대여-상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

※ A지도교수의 대학원생이 동료 B교수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추후 상환 의무는 A교수의 연구책임자계정에 있음

○ (상환 시점 및 방법) 지도교수가 자율적으로 상환기한 내에 본인 연구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

- 연구자의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 하나, 행정부담이 있을 수 있고 누락으로 인한 미상환액 누적 및 도덕적해이 우려됨

○ (상환금 수령 계정) 지원대학원생의 소속 학과(부) 기관세부계정, 기관세부계정 미개설 시 기관전체계정

○ (상환금 용도) (과기부)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 안정화 시점까지는 부족분 재원에 대한 상환금은 부족분으로 제한하여 활용

○ 상환 면제 및 유예

- 상환 면제
 - 정년 퇴직을 4학기 앞둔 교원의 지도학생 (최대 2인)
 - 지도교수의 유고, 투병 등 지도학생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
- ※ 연구운영위원회를 거쳐 상환 면제 조건을 확대할 예정
- (상환 유예) 상환 기한을 복귀(복직)일 기준 둘째 학기 말일로 연장
 - 전문기관의 PM, 공공기관 기관장 파견 등
 - 지도교수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

○ 상환제도 관리방안

- 대상
 - 연구생활장려금 부정 수급 (허위 신청 등)
 - 상환 만료일 지났음에도 대여금 미상환

- 조치 방안

- 연구책임자계정에 잔액이 있음에도 대여금 상환 만료일 이후 1학기 이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산단에서 미상환금 징수 처리

※ 추가 사항은 제도를 운영하며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함

8. 우수연구실 인센티브

○ 대상

- 학생인건비 기준금액(80/110만 원) 초과 지급 연구실

※ 초과되는 금액과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 결정

※ 선별 공식 (연 단위 선별 기준)

(지도학생에게 기준금액 이상 지급한 총개월) / 12

예) “지도학생이 5명이며, 3명이 1년간, 1명이 6개월간 기준금액에 맞추고 1명은 미지급한 경우”
(3명 X 12개월 + 1명 X 6개월 + 1명 X 0개월) / 12 = 42/12 → 3.5

- 연구생활장려금 대여금 우수 상환 연구실

※ 매년 2학기말(2월말) 기준 대여액을 미상환액 및 상환유에 없이 100% 상환한 연구실 중, 연간 상환액이 큰 연구실 순으로 선정

○ (재원 및 집행 순서) ① 대학 대응자금(전체계정), ②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월금(세부계정)

○ (선별 시점) 연구과제,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성과평가 지표가 1년 단위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연 단위(1월에 선별하여 2월에 지급)

※ 인센티브 지급의 구체적인 수준은 기준금액 지급, 상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○ (2025년 예산) 대학 대응자금 10억 중 5억 집행(2학기분), 잔여 5억은 이월

9. 재원별 활용 용도

구분		정부재정지원금 부족분 대여액 (2025년 75억)	상환액 (미정)	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액 (미정)	대학자체 대응자금 (2025년 10억)
개념		▶부족분 만큼 세부 계정별 예산 배분 ▶부족분 지급 용도 로만 활용 가능	▶정부재정지원 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상환하는 금액	▶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잔액 중 1년간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의 20%	▶기 관 전 체 계 정 을 통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한 관리
관리 계정		세부계정	세부계정	세부계정	전체계정
용 도	110/80 부족분	○	○	부족분 지원용도로 사용 가능하나 정부재정지원금과 별도 메뉴 활용	
	기준금액 초과분	X	X	○	○

※ 세부계정 미개설 기관은 전체계정에서 관리

※ 25년도 사업비: 부족분 지원금(75억원),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(예비비, 18.4억원), 대학별 운영비(1.8억원), 대학자체 대응자금(10억원)

10. 사업 규정 및 지침 제·개정(안)

- 「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」을 근거로 「서울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」 제정 병행
 - 지침 개정 절차가 규정 개정 절차보다 간소하고 소요시간도 적어 향후 정부 정책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

〈법학연구소 검토 결과〉

(1차 검토) 지침은 규정 또는 시행세칙의 위임을 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. 따라서 ‘본교의 연구지원에 필요한 사항’으로서, **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규정 제 3조제3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**

(추가 검토) 기존 규정에 수행 근거를 마련하며, 그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뒤에 필요한 사항은 ‘지침’으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

※ (과기부) 대학 자체 지침 제정 전까지는 정부의 사업 운영지침,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운영

○ 향후 일정(안)

- 「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」 개정

2025. 9. 초	전 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
2025. 9. 30.(화)	연구운영위원회 심의
2025. 10. 초	법제팀 검토
2025. 10. 중	확대간부회의 심의
2025. 11. 중	규정심의소위원회 심의
2025. 11. 말	규정심의위원회 심의
2025. 12. 중	학사위원회 심의
2025. 12. 중	규정 개정 공포

- 「서울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」 제정

2025. 7. 말	전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
2025. 8. 중	과기부에 지침 제정(안) 제출
2025. 11. 말	2차 전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
2025. 12. 23.(화)	(규정 개정 공포 후)연구운영위원회 심의
2025. 12. 말	지침 제정 공포

11. 협동과정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월금 계정의 별도 지정

- 교수님들의 원 소속기관 계정을 기본으로 지정하되, 협동과정 기관계정으로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월금 이체 희망 시 협동과정 공문 수신 후 이월금을 협동과정 관리계정으로 이체